

#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 남 시  
【교통행정과】

#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535 호
----------	----------

제출연월일 : 2017. 2.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 1. 제안이유

- 「주차장법」 및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교통행정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관련조항 변경(안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23조)
- 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탁자 선정방법, 용어, 위탁계약 해지 및 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공영주차장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관리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 라. 상위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과징금 가산금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6조4항)
- 마.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7조)

##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도로교통법」 제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 「주차장법」 제19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16년 12월 23일 ~ 2017년 1월 11일(2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정방법	납부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2호 및 제1항제3호의 경우	경쟁계약	제3항에 따른 사용료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행료” 를 “사용료”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탁관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제5항 전단 중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업무수행능력 적정성(운영시스템, 수탁실적, 민원불편처리 등)
2. 책임능력 적정성(주차관제시스템관리, 수입금관리, 정산보고 등)
3. 재무상태 적정성(신용평가등급, 자본금, 부채비율 등)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9조제9항”을 “법 제19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9조제8항”을 “법 제19조제10항”으로, “제3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단서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법 시행규칙 제3조”를 “동법 시행규칙 제8조”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1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를 “발부한다.”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별표4를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교통행정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 · 성명	교통행정과장 윤 영 군
	팀장 직위 · 성명	교통시설팀장 임 국 남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임 국 남 (790-5480)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생략)</p> <p>① (생략)</p> <p>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철용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3조_ (주차요금 및 가산금) (현행과 같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생략)</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p>	<p>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현행과 같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15%;">선정방법</th> <th style="width: 15%;">납부하여야 할 금액</th> <th style="width: 15%;">납부방법</th> </tr> </thead> <tbody> <tr> <td>제1항제1호의 경우</td> <td>시장이 정하는 방법</td> <td>시장이 정하는 금액</td> <td>시장이 정하는 방법</td> </tr> <tr> <td>제1항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및 하남시에서 인정하는 보훈 장애인 봉사단체</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의 계약</td> <td>주차장면적에 대한도로 점용료 또는 시유재산대부료 상당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3개월 단위로 선납</td> </tr> <tr> <td>기타의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경쟁계약</td> <td style="text-align: center;">입찰가격</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및 하남시에서 인정하는 보훈 장애인 봉사단체	수의 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도로 점용료 또는 시유재산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15%;">선정방법</th> <th style="width: 15%;">납부금액</th> <th style="width: 15%;">납부방법</th> </tr> </thead> <tbody> <tr> <td>제1항제1호의 경우</td> <td>시장이 정하는 방법</td> <td>시장이 정하는 금액</td> <td>시장이 정하는 방법</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1항2호 3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경쟁계약</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3항에 따른 사용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3개월 단위로 선납</td> </tr> <tr> <td>기타의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경쟁계약</td> <td style="text-align: center;">입찰가격</td> <td style="text-align: center;">3개월 단위로 선납</td> </tr> </tbody> </table>	구분	선정방법	납부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2호 3호	경쟁계약	제3항에 따른 사용료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및 하남시에서 인정하는 보훈 장애인 봉사단체	수의 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도로 점용료 또는 시유재산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																														
구분	선정방법	납부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2호 3호	경쟁계약	제3항에 따른 사용료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p>③ 제2항에 의한 위탁관리 <u>대행료</u>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④ 위탁관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p>	<p>③ ----- <u>사용료</u> -----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④ 위탁관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p>																																

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중 수탁자가 주차장 관련 제반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번 이상 갱신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신 설>

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중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  
-----  
---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1. 업무수행능력 적정성(운영시스템, 수탁 실적, 민원불편 처리 등)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⑥ ~ ⑨ (생략)</p>	<p>2. <u>책임능력 적정성(주차관제시스템관리, 수입금관리, 정산보고 등)</u></p> <p>3. <u>재무상태 적정성(신용평가 등급, 자본금, 부채비율 등)</u></p> <p>4. <u>그 밖에 필요한 사항.</u></p> <p>⑥ ~ ⑨ (현행과 같음)</p>
<p>&lt;신 설&gt;</p>	<p><u>제5조의2(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u></p> <p><u>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u></p> <p><u>④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6조(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u>별제19조제9항</u>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제6조(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 <u>별제19조제10항</u> -----</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p> <p>1. ~ 4. (생략)</p> <p>② ~ ④ (생략)</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3조(용자의 대상) 「<u>도시교통정비 촉진법</u>」 제31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통사업특별회계(하남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말한다)로부터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제23조(용자의 대상) 「<u>도시교통정비 촉진법</u>」 제49조 -----</p> <p>-----</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26조(과징금의 처분) ① ~ ③ (생략)</p> <p>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한을 붙인 <u>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u></p>	<p>제26조(과징금의 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u>독촉</u></p> <p><u>장을 발부한다.</u></p>
<p>제27조(과태료 처분) <u>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u></p>	<p>&lt;삭 제&gt;</p>

# 《 관계법령 발췌서 》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구분한다.

###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주차장법】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 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2.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4. 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③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입금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실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④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